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04번
----------	-------

2021년 6월 22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5월 2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라. 상정결과 :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21년 6월 22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유연식)

- 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- 나.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금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금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정개요

1) 추정금액 : 843,632천원

- 총 출연금액 35,362,789천원 (기정 출연금액 34,519,157천원)

※ 예산심의과정에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97,476천원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: 746,156천원

2) 추정필요성

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, 코로나 19 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재단 재정상황 악화
-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필요
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'21.8~12월)

-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삼청각은 '전통문화공연과 한식체험'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으로 21.9월 재개관 준비 중에 있음
- 당초 '수익창출형' 위탁사업과는 달리, 삼청각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'행정재산관리위탁'에 의거, 재산관리 업무(시설· 안전관리등)를 수행하였으며, 영업중단(휴업)에 따라 휴직중인 무기계약직(18명)에 대해 휴업수당(평균임금 70%)을 지급하고 있음 *3명 100%지급(노조전임1. 위탁업무수행 2)
- '행정재산 관리위탁' 이 '21.7.31'자로 만료됨에 따라, 하반기('21.8~12월)에 대한 무기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함

*행정재산관리위탁(1차): '20.7.1~'21. 7.31

*행정재산관리위탁(2차): '21.8.1~'25.12.31 (7월중 체결 예정)

-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삼청각 재개관

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(21명)에 대한 서울시
예산지원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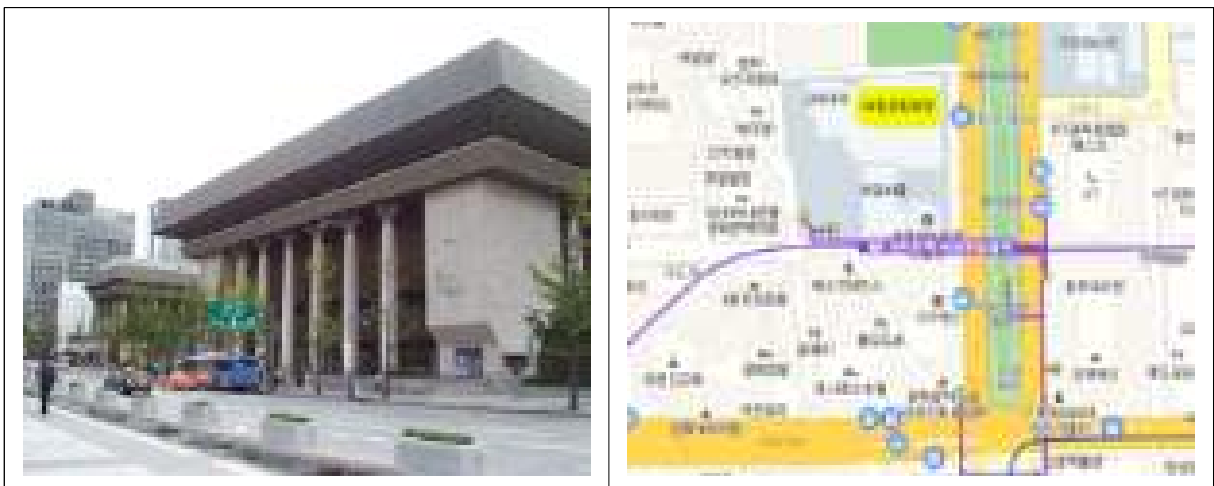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㎡, 건물 63,396㎡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
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

(자산관리과-14889, 2020.12.31)

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
2) 임대료 환급·감면에 따른 환급분, 손실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예산조치 :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1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 서 서울시가 지역상권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사용료 인하의 민간 확산을 견인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¹⁾에 부합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 및 공용 관리비를 감면하는 지원방안²⁾을 마련하였음.

〈추경내역 세부내역〉

(단위:천원)

연번	사 업 명	소요예산	비고
계		843,632	
1	코로나19로 인한 임대수입감소 보전	97,476	
2	삼청각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	746,156	

1)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, 음식점업 10억원 이하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별표3)

2) 서울시 「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」 방침.

-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, 삼청각의 하반기 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시설 운영비를 증액하려는 것임.

〈임차료 감면 현황〉

(단위 : 원)

시설명		입주업체		21년 사용료(연간)	감면액
		상호	대표자		
회관	약기점	조뮤직	조병문	27,751,016	6,880,731
	카페	카페베네	박정신	180,100,000	32,319,315
북 서울 꿈의 숲	카페	전망대	안현정	67,217,550	10,280,601
		테라스			3,833,241
	레스토랑	라포레스타	이경애	64,407,620	15,969,560
	편의점 (이마트24)	편의점	정석윤	96,764,700	19,193,874
		스낵하우스			4,798,468
카페	베이커리	박진석	33,330,000	4,200,493	
합계				469,570,886	97,476,283

〈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세부 내역〉

- <u>인건비(급여, 제수당, 명절상여 등)</u>	
급여 월 3,675천원 * 무기계약직 21명 * 5개월	= 385,875천원
- <u>일반관리비(4대보험, 일반운영비 등)</u>	
·4대보험(사용자 부담금)	
월 9,065천원 * 5개월	= 45,325천원
·일반운영비(공공요금, 사무관리비 등)	
공공요금 월 29,874천원 * 5개월	
사무관리비 월 9,813천원 * 5개월	= 198,437천원
- <u>시설운영비</u>	
·시설용역(전기, 방재, 영선, 경비, 미화 등)	

월81,340천원 * 5개월	=	406,700천원
·시설유지(삼청각 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공사)		
월17,444천원 * 5개월	=	87,220천원
·안전관리(식품위생, 산업안전보건, 방역 등)		
월12,562천원 * 5개월	=	62,810천원
총 운영비용		= 1,186,367천원
※ 2021.8.~2021.12.에 대한 월임대료 예상수입금이 440,211천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<u>출연금은 746,156천원으로 책정</u>		

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〈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〉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및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입점업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8곳에 대하여 9,748만원의 감면을 결정하였음.

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과 전시취소 및 임시휴관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사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조치 결정을 한 8곳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체이므로,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삼청각의 관리방식은 ‘수익창출형 민간위탁’으로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, 재료비 등의 지출을 충당하여 오다가 2020. 7. 1.부터 ‘행정재산의 관리위탁’으로 변경되었음.

‘행정재산의 관리위탁’은 특수 시설물(병원,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·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물)을 그 용도에

맞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,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차이³⁾가 있음.

〈관리방식 전환〉

삼청각 사무		기 존	변 경
시설 관리	· 식·음료 사업 · 조경, 한옥, 기타 시설물, 비품, 장비 등 유지관리사업 ·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	민간위탁	행정재산의 관리위탁 (공유재산법 제27조)
운영	· 문화사업 (전통문화공연, 혼례, 문화강좌 및 문화체험 등)	민간위탁	세종문화회관 고유사업화

현재 세종문화회관은 ‘행정재산관리위탁’에 의거하여 삼청각에 대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 중(2020.7.1.~2021.7.31.)으로 계약 연장(2021.8.1.예정)에 따른 추가 예산(2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)이 필요함.

- 올해 9월에 재개관하는 삼청각은 기존의 식음사업에 편중되어 있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, 일화당 등 공연장에서 세종문화회관의 9개 예술단을 활용한 정기·기획 공연과 외부 대관공연 등의 문화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하지만 삼청각 소속의 21명 무기계약직 직원 중 16명이 식음사업과 관련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향후 세종문화회관이 식음사업을 임대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인력에 대한 직무전환 및

3) “일반재산의 위탁관리”와의 차이(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 38면)

임대업체에 고용승계가 문제될 소지가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연의 취소 또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 진행, 객석 띄어앉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의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한 것인데 8개 업체 모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임점업체이므로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세종문화회관은 기존의 식음사업 중심의 삼청각 운영에서 탈피하고 일화당 등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, 관련 시설의 리모델링과 콘텐츠 계획과 더불어 기존 삼청각 소속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재윤	02-2180-8118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4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정개요

1) 추정금액 : 843,632천원

- 총 출연금액 35,362,789천원 (기정 출연금액 34,519,157천원)

※ 예산심의과정에서 금액 변동 될 수 있음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97,476천원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 : 746,156천원

2) 추정필요성

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 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, 코로나 19 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재단 재정상황 악화
 -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필요
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'21.8~12월)

- 서울시 계획에 따라 삼청각은 '전통문화공연과 한식체험'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으로 21.9월 재개관 준비 중에 있음
- 당초 '수익창출형' 위탁사업과는 달리, 삼청각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'행정재산관리위탁'에 의거, 재산관리 업무(시설·안전관리등)를 수행하였으며, 영업중단(휴업))에 따른 무기계약직(21명)에 대해 휴업수당(평균임금 70%)을 지급하고 있음
- '행정재산 관리위탁' 이 '21.7.31'자로 만료됨에 따라, 하반기('21.8~12월)에 대한 무기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함

*행정재산관리위탁(1차): '20.7.1~'21. 7.31

*행정재산관리위탁(2차): '21.8.1~'25.12.31 (5월중 체결 예정)

-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삼청각 재개관을 위한 시설운영비 및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(21명)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요함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m^2 , 건물 63,396 m^2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

(자산관리과-14889, 2020.12.31)

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
2) 임대료 환급·감면에 따른 환급분, 손실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예산조치 :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혜숙 (☎ 2133-2527)

2021년 추경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'21년도 출연금 추경(안) : 35,362,789천원 (↑ 843,632천원)

- 코로나19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: 97,476천원
-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8월~12월) : 746,156천원

산출내역

-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: 97,476천원
 - 감면 내역(8개소)

	시설명	입주업체		21년 사용료(연간)	감면액	영업 일수	비고
		상호	대표자				
회관	악기점	조유직	조병문	27,751,016	6,880,731	181	
	카페	카페베네	박정신	180,100,000	32,319,315	131	21.2.20. 계약체결 50일 제외
부서 출 금 의 순	카페	전망대	안현정	67,217,550	10,280,601	145	20.12.7~21.2.5. 휴업 일수 36일 제외
		테라스	안현정		3,833,241	181	
	레스토랑	라포레스타	이경애	64,407,620	15,969,560	181	
	편의점	이마트24	정석윤	96,764,700	19,193,874	181	
		스낵하우스	정석윤		4,798,468	181	
	카페	베이커리	박진석	33,330,000	4,200,493	92	21.1.1. ~ 21.3.30. 휴업일수 89일 제외
합계				469,570,886	97,476,283		

- 감면 산출내역

연 번	상호		산 출 내 역	비고
1	조유직		27,751,016원 / 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% = 6,880,731원	회관
2	카페베네		180,100,000원 / 365일 * 131일 * 감면비율 50% = 32,319,315원	
3	카 페	전망대	(67,217,550원 * 면적비율 77%)/365일 * 145일 * 감면비율 50 % = 10,280,601원	북서울
		테라스	(67,217,550원 * 면적비율 23%)/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 % = 3,833,241원	
4	라포레스타		4,407,620원 / 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% = 15,969,560원	
5	편 의 점	이마트 24	(96,764,700원 * 면적비율 80%)/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 % = 19,193,874원	
		스빅 하우스	(96,764,700원 * 면적비율 20%)/365일 * 181일 * 감면비율 50 % = 4,798,468원	
6	베이커리		33,330,000원 / 365일 * 92일 * 감면비율 50% = 4,200,493원	

○ 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8월~12월) : 746,156천원

- 산출내역

- 인건비(급여· 제수당 등) 385,875천원
- 일반관리비(4대보험, 공공요금, 일반운영비 등) : 243,762천원
- 시설운영비(시설용역, 시설유지, 안전관리비 등) : 556,730천원
- 삼청각 별채 임대수입 (4개월분) : △ 440,211천원

- 세부 산출내역

과목구분	산출내역 및 증감사유	
출 연 금	○코로나19 피해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97,476천원*1식	= 97,476천원
	○삼청각 하반기 시설 및 운영비 지원(8월~12월)	= 746,156천원
	-인건비(급여,제수당 등) 월3,675천원*무기계약직 21명*5개월	= 385,875천원
	-일반관리비(4대보험,일반운영비 등)	= 243,762천원
	▷ 4대보험(사용자부담금) 월9,065천원*5개월	= 45,325천원
	▷ 일반운영비(공공요금, 사무관리비 등) 월39,687천원*5개월	= 198,437천원
	-시설운영비	= 556,730천원
	▷ 시설용역 월81,340천원*5개월	= 406,700천원
	▷ 시설유지 월17,444천원*5개월	= 87,220천원
	▷ 안전관리비 등 월12,562천원*5개월	= 62,810천원
	-삼청각 별채 임대 수입(4개월분)	= -440,211천원
		증감사유
	0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입점 임차소상공인 21년 상반기(1~6월) 임대료 감면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분 지원 등(조류직 등 8개소, 97,476천원) 0 21년 8~12월 삼청각 시설 및 운영비 지원(1,186,367천원)에서 삼청각 별채 임대수입 4개월분(440,211천원) 상계하여 반영(746,156천원)	